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4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4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회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표기, 근거 조항 및 어구 수정(안 제5조, 제17조)
-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수정(안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4. 16.)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4. 4. 4.
- 회부일자 : 2024. 4. 16.
- 상정일자 : 2024. 4. 16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유 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표기, 근거 조항 및 어구 수정(안 제5조, 제17조)
-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수정(안 제1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6조에서 지자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법령위임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근거법령 정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심의회의 업무) 제1항제8호 중 (현행) 영 제48조의4를 (개정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8조의4로 명확히 표기함.
- 안 제17조(무상사용 기간)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, 기산일은 현실에 맞게 사용허가일로 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사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합하고 법령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**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
2.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**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(年數)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제96조(조례의 제정·운영)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[붙임 2]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4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표기 명확화와 근거 조항 및 어구 수정(안 제5조, 제17조)
- 나.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수정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2. 1. ~ 2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 중 “영 제48조의4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8조의4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따른다. 다만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심의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 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</p> <p>9. ~ 11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----- -----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48조의4</u>-----</p> <p>9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 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 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따른다. 다 만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 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.

1.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피해를 본 경우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회계과장 권혁영
연락처	(033) 330 - 2123